

# 「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4. 28.
- 회부일자 : 2025. 4. 28.
- 상정일자 : 2024. 5. 7.

## 2. 제안이유

-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김치산업진흥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-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시행(안 제6조)
-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위한 촉진 사업 시행(안 제7조)

- 시장·판로개척 사업 지원(안 제8조)
- 김장의 날 지정(안 제9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김치산업 진흥법」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, 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김치 제조 기술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, 전통김치 제조기술의 복원 및 계승자에 대한 지원,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)에서 군수는 5년마다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김치산업진흥위원회)에서 김치산업 진흥계획, 김장축제 발전, 기반시설 구축지원, 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 추진, 시장 판로개척 등에 대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 구성 및 임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(기반시설 구축)에서 군수가 김치재료가공시설, 김치가공시설, 저온저장시설,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등의 신·증설과 기반시설장비 임차 등을 규정하여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(우수김치재료 사용 등)에서 김치사업자가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(시장·판로개척 지원)에서 국내외 시장·판로개척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(김장의 날)에서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 및 교육,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김장 축제를 활성화하고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□ **김치산업 진흥법**

**제11조(교육훈련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
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세계 김치연구소)**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, 김치의 연구·전시·체험 등을 위하여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(이하 “김치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4조(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·규격출하 및 홍보·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·발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0조를 준용한다.

**제17조(세계화 촉진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,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**제20조(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0조의2(김치의 날)**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·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23조(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)**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**제25조(조세의 감면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